

의안번호	2210083
의 퇴 인	한정애 의원
회 답 일	2025. 5. 20.
추 계 번호	25E2531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로 양도하여 발생하는
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89조제1항제6호 신설(비과세 양도소득)	○ ‘우리사주조합*’에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’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 * -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89조제1항제6호 신설 (비과세 양도소득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개인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우리사주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, 개정안에 따를 경우 소득세수 감소가 예상됨
 - 현행은 대주주를 포함한 개인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우리사주에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
 - 기본공제액: 연 250만원, 적용세율: 10~30%*
 - * 중소기업(대주주 20~25%, 이외 10%), 비중소기업(대주주 20~30%, 이외 20%)
 - 개정안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도록 함
-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, 향후 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할 우리사주 규모,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·양도가액 등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함

- 그러나 향후 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할 우리사주 규모를 사전에 전망할 수 없으며,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파악하여 발생할 양도소득세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것도 곤란함
- 참고로 2025년 5월 19일 기준 우리사주조합 결성 및 우리사주 예탁 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우리사주조합 결성 및 예탁 현황(2025년 5월 19일 기준)

(단위: 개, 천주, 억원)

	예탁조합 수 ¹⁾	예탁 주식 수	취득금액
코스피	320	324,142	91,989
코스닥	481	66,586	5,585
기타	619	78,460	6,147
계	1,420	469,188	103,722

주: 전체 우리사주조합 중 우리사주를 예탁하고 있는 조합 수 기준

자료: 한국증권금융, '우리사주통계', 조회일: 2025년 5월 20일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이정훈	박연서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정훈	02-6788-4669	nororand@assembly.go.kr